

속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

번호

156

제출년월일 : 1993. 5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속초시에는 직영하는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이 없는 바 이에대한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임.

2 주 요 골 자

- 시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에 대한 제3장 삭제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규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첨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조시 조례 제 3

속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증 개정조례

속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장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명	정
제 3 장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	상 제
제 10 조 (세입, 세출)	
① 시직영 시멘트 가공공장 운영사업 의 세입은 탄화계의 전입금, 보조금 , 공장제품의 판매대금 및 기타수입 으로 한다.	
② 시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 사업의 세출은 제경비 기타 주택 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	
③ 시직영 시멘트 가공공장 운영사업 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.	